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사교섭: 쟁점과 과제

- △ 발 표: 최병승 현대자동차 노동자
- △ 토 론: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연구원
- △ 사 회: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일 시: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4시
- 장 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주 최: 한국노동사회연구소(KLSI)
- 후 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발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투쟁과 쟁점

최병승 현대자동차 노동자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투쟁과 쟁점

최병승 현대자동차 노동자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을 시기별로 거칠게 구분하면 ▶1시기는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고, 판정을 받은 후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2004년~2006년이다. ▶2시기는 공백기 후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판결, CTS25일 점거 파업, 75일 양재동 본사상경투쟁, 296일 철탑농성, 희망버스 등이 진행됐던 2013년까지. ▶3시기는 지회 5기 집행부 구성 이후 8.18합의, 9.18~19 서울중앙지법 판결, 금속노조 점거농성(8.18 합의 폐기를 둘러싼 문제), 9.14잠정합의와 부결까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오늘은 2~3시기를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 1시기(2004~2006년)

### ① 주요사건 내역

년도	주요 사건
2004	▶ 2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진정(1차 현대차비정규직아산지회·울산노조, 2차 현대자동차노조) ▶ 127개(울산 101개, 아산 12개, 전주 14개)업체 9,234공정 불법파견 판정
2005	▶ 1월 18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 5공장 전면파업, 1~3공장 잔업거부 ▶ 1월 22일 최OO 조합원 현대차노조에서 분신 ▶ 원·하청연대회의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확정 후 교섭요청 ▶ 5~7월 현대차원하청연대회의 집단 조직화사업 진행 (울산공장 1600여명 조합 가입) ▶ 8월 불법파견 정규직화, 2~3차업체 동일적용(1차 업체 기준) 2차 파업 - 1공장, 5공장 파업 ▶ 9월 4일 류기혁 열사 노조 임시사무실 옥상에서 자결 ▶ 9월 현대차노동조합 임단협 교섭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진행에 합의
2006	▶ 원·하청 상대로 임단협 추진 (원청노조의 비정규직별도 요구안 삭제요구) ▶ 7~9월 쟁의권 확보업체부터 불법파견 정규직화 임단협 체결을 위한 파상파업 전개 - 부분라인 점거형태로 생산중단 ▶ 6월~9월 현대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특별교섭- 현안문제 중심, 하청업체 단협(기본협약 수준) 논의 ▶ 9월 잠정합의 과정에서 직권조인 논란으로 집행부 사퇴 ▶ 12월 26일 노동부가 불법파견 위반으로 현대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이 무혐의 판정
2007 ~ 2010.7.21	▶ 2007년 1월 1일부로 금속노조로 전환 ▶ 200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법 아산지회 해고자 7명 중 4명(2년 이상자)에 대해 근로자지위확인 인정 ▶ 2008년 경남기업(3공장 도장) 업체폐업 투쟁을 제외하면 별다른 투쟁 없음 ▶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3지회 공동 임단협 투쟁 진행 (원·하청을 상대로)

②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년도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의결(승인)기관
2005년	①불법파견에 대한 대국민 사과 ②불법파견 판정한 9,234개 공정 및 해당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 ③불법파견 판정제외 비정규직 직접고용(간접지원, 감시감독, 2~3차) ④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원·하청연대회의 (원하청노조 대의원대회)

③ 주요쟁점

- 2005년 5공장 파업 복귀와 유지여부
- 2006년 독자임단투 VS 불법파견 투쟁
- 2006년 임단협 요구안 수용관련 직권조인 VS 조합원 총회

■ 2시기(2010년 대법 판결 이후 ~ 2013년 5기 집행부 이전) - 주요쟁점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명분도 확보하면서 원청을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던 시기다. 사내하청 업체와 모든 교섭을 중단했고, 현대차에게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은 업체폐업으로 응수했고, 지회는 파업으로 맞섰다. 투쟁에 양태도 공장점거와 전면파업을 선택했다. 또 조합 내부비리로 14개월 비대위를 구성하는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또한 현대차지부의 조직력 흔들기(3000명 안 수용 간담회 등)와 사측 탄압(신규채용 확대)으로 조직력이 약화되어 갔다. 296일간 철탑농성과 4차례 희망버스를 진행했지만 사측은 소송포기를 전제로 한 신규채용 3500명을 제시했다. 결국 교섭은 중단됐고, 현대차비정규직3지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뽑는 선거에 돌입한다.

① 주요사건 내역

년도	주요 사건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2 대법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노동자 불법파견 판결</li> <li>▶ 8월 원청(현대차)에게 2015년 임단협 요구안 발송</li> <li>▶ 8~9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집단가입과 소송인단 모집 (울산 - 1200여명 조합원 가입)</li> <li>▶ 10.30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요구 양재동 상경투쟁 (울산 조합원 1천명 참여, 3지회 1600여명)</li> <li>▶ 11.15 현대차비정규직지회 CTS25일 점거와 전면파업 돌입 (전주, 아산 동조 파업 - 부분파업)</li> <li>▶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승리를 위한 총파업 결의 (→ 여러 이유로 파업 돌입 못함)</li> <li>▶ 12.9 점거파업 해제 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 진행 (4대 의제)</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덕우 수석, 최정민 사무장 사퇴에 따른 현대차비정규직지회 3-2기 임원 추가선임. (수석부지회장 최병승, 사무장 윤석원)</li> <li>▶ 2월 양재동 광고탑 고공농성과 2차 파업 출정식 및 4시간 파업(21일)</li> <li>▶ 2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비 횡령 폭로(이상수 집행부 전원 사퇴)</li> <li>▶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유지</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4. 현대차비정규직지회 4시 집행부(지회장 박헌제) 당선. 비대위 14개월 청산</li> <li>▶ 원하청연대회의 구성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확정하고, 1사 1조직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현대차 지부와 3지회 간 의견 차이로 추진 중단.</li> <li>▶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중 198명 신규채용 시작</li> <li>▶ 8.17. 신규채용 3000명 제시안에 항의하며 현대차지부 교섭장 봉쇄</li> <li>▶ 8.20. 1공장 진격 투쟁</li> <li>▶ 8.26. 확대간부회의에서 요구안 수정 (첫째, 사측의 신규채용 제시안 폐기하고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둘째,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쟁취한다.)</li> <li>▶ 10.17. 천의봉 최병승 명촌 쪽문 철탑농성 돌입 (296일 진행)</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철탑농성 중인 최병승 인사명령.(6300048 사번부여)</li> <li>▶ 6.15 중단한 특별교섭 재개 (사측 3500명 신규채용안 제시)</li> <li>▶ 7.20. 까지 4차 희망버스, 2차례 포위의 날 진행.</li> <li>▶ 8월까지 현장 부분파업, 점거파업 지속적으로 진행</li> <li>▶ 9월 마무리 집중교섭 진행하였으나 교섭중단 후 각 지회 임원선거</li> </ul>

②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년도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의결(승인)기관
2010년	[불법파견 8대 요구 - 2010년 임단협 요구안] ①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②불법파견 투쟁과정 해고자 전원 정규직 전환 ③피해보상과 체불임금 지급 ④故 류기혁 열사 명예회복 ⑤불법파견에 대한 공개사과와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대의원대회 (금속노조 중집)
	[4대 의제] ①농성장 비정규직 고소고발, 치료비 등 해결 ②금번 농성자의 고용보장 ③지도부의 사내 신변 보장 ④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조합원 총회
2012년	[불법파견 특별교섭 6대 요구안] ①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 모든 생산하도급 정규직 전환(12월부터 변경) ②비정규직 투쟁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징계 등 철회와 원상회복 ③불법파견에 대한 공개사과 ④비정규직 노동자 사용금지 ⑤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⑥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조합 활동 보장	원·하청연대회의 (현대차3지회 대의원대회와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

③ 주요쟁점

- 2010년 동성기업 폐업에 따른 요구와 투쟁 방침을 둘러싼 논의
- 2010년 CTS 점거파업 해제 후 현안문제 해결 4대의제 교섭 VS 불법파견 교섭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2010년~13년 탄압현황]			
	아산지회	울산지회	전주지회
해고	44명	57명	16명
정직	160명	463명	54명
수배	2명	26명(금속1, 지부2 포함)	5명
구속	2명	9명	1명
손배청구 금액	25억 6천만원	374억 2천만원	16억 7천만원

- 2012년 8월 26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회의 결정에 따른 논의(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VS 조합원 우선 전환)

■ 2012년 8월 26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지회 해설

- 1) 사측의 신규채용 제시안 폐기하고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 2)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쟁취한다.

첫째,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축소, 은폐하는 ‘공정블록화 전제하는 사내하청노동자 신규채용’을 반대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주) 제시안을 즉각 폐기한다.

둘째,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협상(본 교섭)에서 불법파견 관련 내용을 심의, 합의하는 것을 반대하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을 교섭위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심의, 합의한다.

셋째, ‘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 한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다. 즉, 스스로 투쟁하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투쟁에 불참하였던 비조합원에게도 동참의 기회를 열어놓고 있으므로 결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넷째, 불법파견에 따른 즉각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지만 단계적 접근도 고려할 수 있다.

- 2012년 9월 마무리 교섭을 둘러싼 논란 - 소송취하 조건강화 협의/일부 교섭 여부 등

	울산지회	전주지회	아산지회
대상	8,500명 (생산하도급)	8,500명	8,500명
방식	전환(공정, 근속 인금 단협)	전환(공정, 근속) 임금, 단협은 소송결과에 따름	전환(공정, 근속 인금 단협)
해고자	2010년 전 해고자 포함 (정규직 전환)	2010년 16명 (정규직 전환)	2010년 전 해고자 포함 (정규직 전환)
조합원	조합원 우선 전환	조합원 우선 전환	모든 사내하청 즉각 전환

### ■ 3시기(2013년 5기 집행부 선출 ~ 2015년 잠정합의 부결) - 주요쟁점

현대차비정규직3지회와 현대차지부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됐다. 새로운 집행부는 2013년 1월 9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처음에는 선결 조건 없는 교섭 반대였지만 입장표명, 조건 없는 교섭으로 이어졌다. 교섭은 진행했고, 현대차비정규직지회(울산)만 ‘조합원이 배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7월 2일 실무교섭 중 퇴장함. 아산과 전주지회는 교섭을 지속했고, 8.18 ‘사내하도급 합의’에 서명한다. 현대차비정규직아산·전주지회는 합의 다음날인 19일 비공개합의서도 공개하지 않고(전주), 조합원 찬반토론을 봉쇄(아산) 하는 등 총회를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진행했다. 이 결과 ‘8.18 합의’는 전주는 71.6%(268명 중 192명 찬성), 아산은 57.1%(161명 중 92명 찬성)로 가결되었다. 울산지회 조합원에게도 8.18 합의는 적용했고, 신규채용에 울산지회 조합원도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서 조직력은 계속 약화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상급단체를 비롯하여, 연대단위들이 불법파견 투쟁의 계륜으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인식하면서 지회 고립은 더 강화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소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둘러싼 농성과 대대대응이다. 이후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특별교섭을 거부하고, 원청과 직접교섭을 진행하지만 현대차 교섭해태로 한차례 교섭도 이뤄지지 않았다. 투쟁을 결의했지만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신규채용에 더 많은 조합원이 응시하게 된다. 그럼에도 상급단체 지침인 4.24 총파업과 7.15 총파업에 참여한다. 이후 법원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진행하길 결의하고, 9.14 사내하도급 관련 잠정합의(이하 9.14 잠정합의안)에 이르렀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었다.

① 주요사건 내역

년도	주요 사건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 특별교섭 재개를 위한 3차(현대차비정규직3지회, 현대차지부, 금속노조)회의 진행</li> <li>▶ 4.10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li> <li>▶ 7.2 불법파견 특별교섭 21차 실무교섭에서 울산지회 퇴장</li> <li>▶ 8.18 현대차비정규직 아산/전주지회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서'에 서명합의</li> <li>▶ 8.19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아산(57.1%)/전주(71.6%) 조합원 총회에서 8.18 합의 가결</li> <li>▶ 11.24 금속노조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8.18 합의' 폐기 결정</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 금속노조 45차 중앙집행위에서 대의원대회에서 폐기한 8.18 합의를 존중하고, 조직내 혼란에 대해 위원장이 사과한다는 내용의 '38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 건'을 원안통과.</li> <li>▶ 1.12 금속노동자 257호 위원장 담회문 발표</li> <li>▶ 1.13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로비에서 농성 돌입 → 1.20 위원장실 집기 빼고, 농성 돌입</li> <li>▶ 2.16 현대자동차와 2015년 단체교섭 요구 상견례 (사측 참석하지 않음)</li> <li>▶ 2.26 현대자동차아산공장비정규직지회 해고자 4인 대법원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인정 (3인은 2년 이하라 패소)</li> <li>▶ 3.3 금속노조 39차 대의원대회에 '현장발의안' 상정했으나, 성원부족으로 안건 자동폐기.</li> <li>▶ 4.21 2015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대비 46.4%로 부결</li> <li>▶ 4.24/ 7.15 민주노총 총파업과 금속노조 사내하청총파업 참여</li> <li>▶ 8.13 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li> <li>▶ 9.12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 실무의견 접근 안 도출 → 9.14 '사내하도급 관련 합의' 잠정합의 서명</li> <li>▶ 9.20 '9.14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회에서 60.1%로 부결</li> <li>▶ 9.12正大위원회에서 재교섭을 하지 않고 6기 지회 선거 돌입 결정.</li> </ul>

② 불법파견 특별교섭 요구안

년도	2015년 임단협 요구안	의결(승인)기관
2015년	<p>①현대자동차(주)는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②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한 사내 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고소,고발,징계(해고자),손배,가압류등을 즉각 철회하고 명예회복 및 원상회복을 실시한다. ③현대자동차(주)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하여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실시한다. ④현대자동차(주)는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노사합의한다. ⑤현대자동차(주)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무급휴가,계약해지 등)은 즉각 중단한다. ⑥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p>	<p>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대회 (금속노조 중집)</p>

③ 주요쟁점

- 8.18 합의 폐기 VS 조합원 총회 결정 → 38차 정기대의원대회 (폐기 결의)
- 선결조건 후 교섭 VS 조건 없는 교섭
- 중집의 '38차 정기대의원대회 평가'와 위원장 사과문 관련 논란



- 금속노조 위원장실 점거 VS 4.24 총파업 집중
- 대법승소자 5인 투쟁 방침을 둘러싼 논쟁
-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 VS 특별교섭

[4/21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투표자대비 69.8%, 재적대비 46.4% 부결

	1공	2공	3공	4공	5공	엔/변/소	CKD	시트1	시트2	수출	해투위	총계
재적	154	182	113	52	27	83	38	30	28	12	76	795
투표자	99	108	77	46	22	81	24	16	26	12	17	528
찬성	69	77	30	29	18	73	13	11	23	11	15	369
반대	30	31	47	16	4	8	11	5	3	1	1	157
무효				1							1	2

- 법원 판결에 따른 교섭 VS 현 시기 교섭 거부
- 2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에 대한 해석

[9/9 2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투표자대비 85.1%, 재적대비 70.1% 가결

	1공	2공	3공	4/5공	엔/변/소	CKD	시트1	시트2	수출	해투위	총계
재적	146	178	94	97	81	35	8	20	12	74	745
투표자	127	148	88	82	79	33	7	16	12	26	618
찬성	120	137	77	70	43	28	2	16	8	25	526
반대	7	11	11	10	36	5	5	0	4		89
무효				2						1	3

- 9.14 잠정합의안 부결 원인과 의미

[9/20 잠정합의 울산 투표 결과] - 찬성 38.2%, 반대 60.1% 가결

	1공	2공	3공	4공	5공	엔/변/소	CKD	시트1	시트2	수출	해투위	총계
재적	143	157	82	65	22	82	35	17	21	14	79	717
투표자	138	143	78	64	22	82	35	16	19	13	28	638
찬성	63	42	37	22	3	10	32	2	17	8	8	244
반대	75	101	39	40	19	71	3	14	1	4	17	384
무효			2	2		1			1	1	3	10

- 재교섭 VS 6기 임원 선거

## ■ 몇 가지 추가적인 쟁점

- 현대차불법파견 투쟁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인가?
- 9.14 합의 이후 한 노동자는 “손해배상도, 형사처분도, 벌금도, 해고자 생계비도, 투쟁도, 동지끼리 주고받은 상처도 모두 지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감수하며 싸워왔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 못했냐?”고 물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투쟁은 “정규직 상승운동”이었나?
- 9.14 잠정합의로 8.18 합의가 정당화 가능한가?
-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 ■ 4시기 전망에 대한 개인적 소고

- 사실상 9.14 사내하도급 관련 잠정합의는 “원청사용자성을 주장하며, 원청과 직접 교섭과 투쟁을 전개한 운동”의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었다. 이미 8.18 합의로 인해 소송취하를 전제로 한 신규채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는 현대차와 동일하고, 한국지엠은 발탁 채용과 최종심 인정으로 합의했다. 쌍용차도 현대차 기준 이상은 어렵다고 했고, 동양시멘트는 소송취하 하청업체(자회사) 취업을 제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많은 죄(빛)을 졌다.
- 9.20 조합원은 부결을 선택했다. 부결을 찍은 이유는 다양하다. 기존 입사자와 동일적용을 했다는 이유, 위로금이 적다는 이유<sup>1)</sup>, 신규채용이 안될 수 있다는 불안감, 조합원이 모두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법원 판결 못한 이유로, ‘내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불법파견 투쟁 원칙을 훼손해서 등. 하지만 이 모든 이유가 하나로 통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존감이다. 이 대로는 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자존감. 하지만 많은 조합원은 현실을 택하고, 신규채용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 4시기 방향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재교섭으로 해서 ‘9.14 잠정합의안+알파’로 마무리 하거나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의 새로운 불씨를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불씨를 살린다 해도 상승기처럼 투쟁 하긴 어려울 것이다. 어찌면 아무것도 못하고 법원 판결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는 사측 탄압(손배가압류 집행 등)으로 의지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부결 이후 지회장은 사석에서 “현장에서는 5천~1억5천을 본사에서 제시했는데 지회장이 500만원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얘기함.

- 그렇다면 고통을 당해온 조합원들이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재와 같은 방식. 즉 요구안은 '6대 요구'로 주장하고, 실내용은 처우조건 강화를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집행부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부결한 합의안'보다 조금 더 나은 처우조건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따라서 새판을 짜야한다. 조합 가입 문턱이 높고, 불법파견 투쟁을 위해 촉탁직을 배제하는 조합 활동은 동일한 오류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새로운 판은 조합원 배제 없는 신규채용(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는 전망,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조직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없애겠다는 사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조직하지 못한 4~50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를 포함해서, 3000명이 넘는 촉탁계약직까지 폭을 여는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명확한 전망과 노동자 단결을 최대한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현재와 같은 합의를 하지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 토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사교섭, 쟁점과 과제 토론문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토론문]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사교섭 쟁점과 과제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1.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하면 갑작스런 비용증가로 현대차 경영이 어려워진다?

-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의 비용문제는 크지 않음
    - 2012년 10월 심상정 의원실과 금속노조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비용 산출
      - : 8천여 명 사내 하도급 정규직 전환 시 연 2,859억원 추가비용 소요
      - 2011 현대차 매출액 42조 8천억 원의 약 0.6%
      - 당기순익 4조 7천억 원의 약 6%에 불과
  - 생산직 인원 확대 필요성
    - 현대차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규직 생산직 인원은 2000년대 들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
      - : 국내생산대수 2000년 152만 5천대 -> 2011년 189만 2천대 (24% 증가)
      - 생산직인원수 2000년 3만 879명 -> 2011년 3만 1,569명 (690명, 2.2% 증가)
- => 따라서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은 비용 측면에서도 큰 타격 없이 가능한 상황.  
나아가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상황(정규 생산직 인원수가 10년 이상 그대로인 상황)

## 2. 그러면 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가?

- 비정규직은 외주화와 중층적 하도급구조 구축과 함께 현대차 수익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 현대차는 모듈화 등을 통해 외주화를 확대하고 계열사가 핵심을 장악한 가운데 중

- 층적 하도급 구조를 형성하여 불공정 거래 등을 통해 하도급의 하위단계로 비용과 위험을 전가
- 동시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내부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을 획득
- 이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대체가 가능한 생산의 조건을 만들어옴.
    - 노동배제적, 숙련절약적 생산방식
      - : 제품설계 및 선행생기 단계를 강화하여 생산 이전 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을 거의 결정
      - : 생산과정은 노동에 의한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단순화함. 노동의 숙련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동화 진행.
      - : 이러한 방식에는 노동을 기업의 경쟁력 혹은 자원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깔려있음.
      - :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화하거나 보다 저렴한 노동으로 대체하려 함.
        - 즉 정규직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모듈화 등을 통해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노동을 대체하려 함.
    - => 즉 숙련의 필요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생산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언제든 투입되어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대체가 가능한 조건들을 만들어옴.
  - 이런 조건에서 오늘날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단순히 정규직 고용안정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대체하는 수단이 됨.
    - 98년 정리해고 경험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는 급격한 정리해고를 하기보다는 정규직 자연감소분을 충원하지 않거나 비정규직으로 충원함.
      - : 10년간 생산대수가 24%나 증가했음. 그에 상응하여 생산직 인원충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모듈화 등을 통해 내부공정을 외주화하거나,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충원해옴.
      - : 지난 10년간 생산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규 생산직 인원이 늘지 않는 이면에는 비정규직이 그 공백을 메꿔주고 있었음.
    - => 생산, 판매규모의 엄청난 성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야 하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단위노동비용을 절감 => 수익 증대

### 3. 비정규직을 활용한 노노간 갈등의 유발, 노동의 분할 통제

- 이는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 회사의 대안

- 2013년 회사가 계산하는 사내하청 6,800명 중에서 3,500명을 2016년까지 신규 채용.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무분리 등을 통해 진성도급화

- => 신규 채용을 둘러싸고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노조 간, 사내하청 내부 집단 간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

- 불법파견에 대한 인정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논란이 제기되고 사회적 비판이 심해지니까 일부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으로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노동 내부의 갈등과 분할을 유발.

- => 이렇게 보면, 향후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면서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나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때, 일부에 대한 '선별적 신규채용'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 분할을 조장하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 있음.

- 한편, 정규-비정규 혼성작업에 대해 업무분리하면서 진성도급화하겠다는 말은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됨.

- 나아가 사내하도급법 등을 통해 생산공정의 파견 합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측됨.

### 4. 비용전가 중심의 수익추구전략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와 이슈화: 원청 대 자본의 책임 강화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내하청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원청회사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노동력 활동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그간 간접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쟁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제기되고 이슈화되어야 할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됨. 이 이슈를 정리하게 되면 일시적인 문제봉합은 있을 수 있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들이 보다 세련된 형태로 반복될 수 있음.

- 원청 책임성 이슈의 산업, 지역적 확장과의 연대: 그런데 원청의 책임은 단지 간접고용에만 국한되지 않음. 오늘날 원청대기업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하청관계와

불안정노동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본격화하는 수익추구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따라서 자신의 수익획득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주체들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이슈화할 필요